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5.5.27.)

---

# 조례안 심사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 목 차 ---

의안 번호	건 명	페이지
2015 - 30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1
2015 - 31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의안번호 제2015 - 30호>

#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5. 7.
- 나. 제출자 : 최광열 의원 외 8명
- 다. 회부일자 : 2015. 5. 12.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5. 26.

## 2. 제정이유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형평성을 감안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 3. 주요골자

-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지원대상 공동주택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다. 지원기준과 보조사업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안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5년 이내 다시 신청할 수 없음
- 라. 보조금 지원신청, 교부결정, 변경, 정산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제11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제정 조례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받고 있고, 10세대 미만의 자연마을에도 주민편의 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형평성을 감안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이루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5 - 31>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5. 7.
- 나. 제출자 : 강철우 의원 외 4명
- 다. 회부일자 : 2015. 5. 12.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5. 26.

## 2. 제정이유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

## 3. 주요골자

-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협력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거창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 라. 교통안전교육, 협력체계구축, 등·하교 교통지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제8조)
- 마.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제정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하는 조례이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